

 <b>금융위원회</b>	<b>보 도 자 료</b>	·미래창조 금융
	<b>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</b>	·따뜻한 금융 ·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, 금융정책과, 보험과		
책임자	전요섭 전자금융과장 (2156-9490) 이세훈 금융정책과장 (2156-9710) 박정훈 보 험 과 장 (2156-9830)	담 당 자	송용민 사무관 (2156-9491) 한송희 사무관 (2156-9714) 임형준 사무관 (2156-9832)
배포일	2013. 6. 19.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~48) 총 5매

## **제 목 :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등 금융위 의결**

### 1.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2013.6.19(수)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등을 의결
- 금번 규정은 IT기술 발달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가 상당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,
  - 한-EU, 한-미 FTA 협정\*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 (data processing)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이전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음
  - \* 협정문상 한·EU FTA 발효('11.7.1) 후 2년내('13.6.30), 한·미 FTA도 발효('12.3.15) 후 2년내('14.3.14) 금융회사의 정보이전을 허용하여야 함
-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 TF 및 관계부처간 협의\*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
  - \* 금융위, 안행부, 외교부, 기재부, 금감원, 각 업권협회, 학계, 법조계 등
  - 규정변경예고('13.4~5월),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('13.5월) 등을 거치며 일부 규정의 내용이 수정되었음

## 2. 주요 내용

### 1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

- 금융회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
  - 국외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탁 금융회사의 본·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
  - 국내외 위탁을 불문하고,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
    - \* (예외) 금융이용자 보호, 금융감독권한 행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 가능
- 관련 법령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상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\*에는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며,
  - \*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,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재(기관경고 이상 또는 형사처벌)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 - 위탁 이후의 감독가능성 확보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위·수탁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\*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함

#### <표준계약내용 주요사항>

정보주체의 권리, 감독당국에의 협조, 수탁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정보이전 금지, 위·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, 해외위탁시 국내 재판관할 등

-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\*하여야 함
  - \* 현행 「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과 동일

### 2 위탁되는 정보의 보호

-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, 개인정보보호법, 금융실명법,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\*를 이행해야 하며,
  - \* 실명법 등 일체의 법령 개정없이 현행 법령상의 모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  
(정보처리시 사전 동의,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호조치)

○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별도로 국외로의 이전 자체를 금지

□ 정보처리 위탁시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,

○ 특히 국내·외를 불문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는 추가적 절차를 의무화

<정보위탁 관련 보호조치>

1. (수집·이용 등) 처리시 정보주체의 **동의** (개인정보보호법 §15, 23)
2. **암호화** 등 안전성 확보조치 (개인정보보호법 §29)
3. 민감정보가 위탁처리된다는 내용의 **별도 고지** (신설 규정)
4.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**해외 이전 금지** (신설 규정)

### 3 전산설비의 국외위탁

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해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외의 본·지점 또는 계열사에 한해 위탁이 가능

○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을 제한\*할 수 있음

\* 현행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의 국내소재 요건도 유지(전자금융감독규정 §11)

<국외 위탁불가 전산설비>

1.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
2.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(다만,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는 제외)
3.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
4.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,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
5. 상기 각 호의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IT 보안설비

#### 4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

- 위·수탁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수용 의무 부과
- 위·수탁회사가 본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#### 5 타 규정 정비사항

- 「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범위 축소
  - ‘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’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, 적용상의 혼선을 배제
-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상 금융정보의 저장 금지 완화
  - (현행) 외주업체의 금융정보 저장 금지
  - (개정) 적법하게 위탁받은 경우 외주업체의 금융정보 저장을 허용하고, 그 외의 ‘무단’ 저장은 금지
- 「보험업감독규정」중 설비의 국외이전 관련사항 정비
  -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의 설비 이전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신설되는 규정에 따르도록 통일

### 3. 향후 일정

---

- 동 규정 제정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6.25일경 고시될 예정이며,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됨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